한 국 동 서 철 학 회 논 문 집 『동서철학연구』제63호, 2012, 08.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관한 고찰

이 츳 하 (전북대)

한글 요약

정치영역은 국가의 권력과 국민의 권리 사이에 긴장과 담론이 끊이지 않는 공론의 광장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대한 이러한 법적 규정은 국민의 동의와 국가권력의 관계를 말해준다. 일반시민들은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뒷받침하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절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의해 규정되는 의무와 행위에 따르겠다는 권리의 이행과정이며 실제로 국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많은 사회제도와 법 규정들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국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 반대의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적 시위로써 연대해 간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정치행위가 국가권력의 결정이나 집행을 제지하거나 재고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결정한다면 그 권력은 형식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정치적 이상으로서 헌법이 나타내는 정당성은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고 실행가능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을 요청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적 관점을 통해 국가의 권위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그 기초적인 가정과 신념들이 우리의 정치 적 삶을 규정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화 이후의 민주 주의를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권력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고 확장시킬 수 있 는 가능한 해석들로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국가권력, 자연상태, 사회계약론, 흡스, 로크

1. 들어가면서

국가는 개인의 삶이 펼쳐지고 동시에 그 삶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규정되는 권리와 의무로 뒤얽힌 복잡한 정치공동체다. 우리는 국가라는 개념을 스스로에 게 물었을 때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이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나의 개인적 삶과 국가라는 추상적 이미지의 실체를 중첩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의 권력과 실행을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으며, 그것의 힘을 느낀다. 예를 들어 국가가 추진하기로 결 정하는 과세정책에 대해 우리는 무관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얻은 수입과 사유재산이 그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 국 가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인정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이상 이와 같은 국가권력으 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때때로 우리는 국가의 처분이 부당하다 할 지라도 그것이 법으로 정한 원칙이기에 따라야만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법으로 정해진 원칙의 힘의 정당성, 즉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수많은 법과 제도들의 정당성을 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다. 국 가권력이 우리의 개인적 삶의 전반을 규정하고 때때로 그것이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것으 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단지 우리가 선거에서 선출한 대 표자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위임하는 형식으로 법과 제도에 순응하겠다는 간접 적 서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기에는 그 근거가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설득 력 있게 수용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국가권력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이라는 것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권력에 대한 해석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숙고하는 일은 우리의 정치적 삶에서 결코 배제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물음이며, 정치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이 개인의 삶과 연결되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의 기원과 그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 묻는 방식들의 한 유형으로서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계약론은 국가의 성립과 권력의 정당성을 개인의 동의와 계약적 협력의 개념을 통해 구체화 시킨다. 우리는 흡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적 전통을 검토하면서 국가와 개인 간의관계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것의 현재적 의의와 비판적수용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민주화의 형식적 완성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국가권력의 강제적 실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동시에 국가권력이 시민사회와의 대립을 통해 그 존재와 역할을 실감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화합과 행복을 추구하고 갈등과 불일치를 조정하는 공공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보다 고차원적인 이해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 사회계약론으로서 흡스와 로크의 국가권력에 대한 이해와 그 정당성에 대한 논증들을 검토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사회의 권력과 그 실행에 대해 숙고해 보고자 한다.

2. 국가이전의 사회 I : 홉스의 '자연상태' 와 개인개념

흡스는 왕권에 대한 인민의 도전과 투쟁이 일어났던 17세기 영국사회의 시민 혁명기를 거치면서 복잡한 정치적 사태와 혼란기를 경험한다. 이러한 정치·사회 적 경험은 흡스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과 국가의 개념에 대해 숙고하도록 만든 다. 즉, 국가라는 것은 인민에게 있어 어떤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인민은 국가와 관계하여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 민한 것이다.1)

중세 봉건제도의 붕괴와 상공업의 발달은 절대왕권에 복중했던 개인들의 정 치적 참여와 요구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자연스럽 게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청 하게 된다. 이것은 자유주의의 전통이 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관점의 중요한 토 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²⁾

근대 이전까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주로 목적론적인 토대 위에서 이해되

¹⁾ 레오 스트라우스는 홉스의 정치철학이 갖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홉스의 정치적 중요성을 언급하기위해, 우리는 근대 문명의 이상으로서, 부르주아 -자본주의적 발전과 사회운동의 이상이 홉스에 의해 발견되고 매우 깊이 있고 명료하게 해석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만약 홉스의 학문적 기여가 없었다면 해 젠, 칸트 그리고 루소의 도덕철학도 불가능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철학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Leo Strauss, The Political Philosophy of Hobbes, Chicago: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1952, Ch. I을 참조할 것.

²⁾ 홉스를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은 존 그레이, 손철성 역, 『자유주의』, 도서출판 이후, 2007, pp.30-31과 C. B. Macpherson,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Hobbes to Lock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pp.1-2를 참조할 것.

었다. 즉, 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선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보았다. 대표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은 사회와 개인의 유기체적인 관계를 잘보여주는데, 그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개인의 개체성이 사회화를 결핍할 경우, 인간은 독특한 도덕적 또는 심리적인 특성들이 결합되지 않은 단순한 생물학적 종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3)

그러나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인식하게 되면서 공동체는 개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연결된 고정된 배경으로서 더 이상 생각되지 않았다. 적어도 개인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개인이라는 사회적 주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홉스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물음을 요청하도록 만들었다. 즉, 국가는 무엇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어떤 자격과 지위로서 그 안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것이다.

흡스는 그에 답변을 구성하기 위하여 '자연상태'(state of nature) 라는 국가 이전의 사회를 전제로 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정의하려고 한다. 그러한 정치철 학적 시도는 인간본성을 선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악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정당화 된다.

흡스는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에서 인간의 본성을 정의하면서 모든 인간은 정신과 신체의 능력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물론 때때로 정신적 능력이나 신체적 특성이 보다 뛰어나고 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차이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이 다른 사람보다 더 고려되어야 함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4) 흡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희망을 갖는다. 그것은 인간이 원하는 대상에 대한 자연적 욕구이다. 따라서 만약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수의 인간이 동일한 욕구를 지닌다면 인간은 서로가 적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는 인간의 자기보존과 쾌락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며 때때로 타인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5) 즉, 흡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자기보존의 욕구이며, 이것으로부터 인간본성은 타인의 복지보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보다 충실한 것으로서 정의된다. 따라서 인간

손 세이어즈, 김요한 역, 『손세이어즈의 플라톤 「국가」해설」, 서광사, 2008, pp.60-61 참

⁴⁾ Thomas Hobbes, Leviathan, ed. Michael Oakeshott, Oxford: Basil Blackwell, 1946, pp.80-81 참조. 이후 본고에서 『리바이어던』과 관련된 인용은 여기에 인용된 문헌을 사 용한다.

⁵⁾ Leviathan, p.81 참조.

본성은 국가 이전의 '자연상태'를 정당하게 추론하도록 이끈다.

흡스가 해석한 것처럼, 우리가 오직 인간본성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욕구와이해관계에 집중된 것으로서 받아들인다면, 국가라는 권력의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적 상태의 상황은 개인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갈등하고 싸우는 전쟁터나 다름없는 것이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개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공포를 느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투쟁을 계속해야하며 야만적인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흡스가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흡스는 다음과 같이 '자연상태'(state of nature)를 기술한다. "모든 사람을 공포로부터 지켜주는 국가권력이 없는 시기에 사는 사람들은 투쟁 상태에 처해 있다. 그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것이다."6)

따라서 그런 투쟁상태에서 평화에 대한 보장은 없으며, 모든 사람이 서로 적대하는 상태가 될 뿐이다. 자연상태에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어떤 공동체적 결과물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은 모두에게 최악의 상태로서 공포와 죽음의 위험 속에서 빈곤과 야만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사태이다.7)

홉스가 인간본성에 대한 탐구를 기초로 '자연상태'를 추론했지만, 그것은 실 제로 존재한 것으로서 홉스가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상태는 국가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기본적 토대로서 작용하는 전제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8)

그렇다면 자연상태의 개인이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전술했듯이 홉스가 이해한 것처럼, 인간은 자기보존의 욕구를 지니는 동시에 공포를 피하고자 하는 이성적 동기를 갖는다. 적어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

Leviathan p.82.

⁷⁾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우리가 문화, 예술, 문자는 물론이고 법, 정의, 부정의에 대한 관념 그리고 사회라는 것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모두에게 최악의 상태라고 말한다. 인간본성과 '자연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eviathan, Ch. 13을 참조할 것.

⁸⁾ 김용환은 "자연상태는 실제상황이 아니라 시민사회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가설 또는 비역사적 허구라는 것이 홉스 연구자들의 공통된 해석이지만 자연상태의 정황들은 현실세계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고 보면서 홉스의 사회계 약론에서 가정되는 인간본성의 심리적 가정들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김용환, 「홉스의 힘의 정치철학: 폭력과 통제」, 『동서철학연구』 제29호, 한국 동서철학회, 2003, p.125 참조.

람들에게 있어, 자연상태는 부정되고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⁹⁾ 홉스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 이성에 따라 서로 협력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면서 국가권력의 기원과 정당성 개념을 설명한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홉스가 국가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3. 국가권력의 기원과 홉스의 계약이론

흡스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국가권력이 왜 요청되어 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리바이어던』에서 나타난 야만스럽고 악한 인간의 본성은 개인들을 투쟁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므로, 적어도 그러한 투쟁을 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별 다른 숙고 없이 이런 표면적인 방식으로 홉스의 국가권력을 이해 하면 우리는 자칫 그의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런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권력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복종해야 한다는 잘못된 암시 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보존의 욕구와 이해관계에 매달리는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대사회의 개인에 대한 부분적 가정으로 성립될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이해관계에 몰입하는 자신이나 타인을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배려하는데 좀처럼 쉽지 않은 사태들에 직면해서 고민하는 일도 적지 않다.

따라서 홉스의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완전히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연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러한 은연중의 동의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홉스가 요청하는 권력은 권력이라는 것 자체로서 그것 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홉스의 정치철학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국가권력은 개인 의 자유와 선택 그리고 행복한 삶의 추구보다 항상 우위에 있게 되며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올바른 논의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⁹⁾ Leo Strauss, The Political Philosophy of Hobbes, Chicago: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1952, p.16 참조.

유감스럽게도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국가권력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이런 표면 적 이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독재자가 휘두르는 부당한 공권 력도 이런 의미에서라면 사회적 안정과 갈등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당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⁰⁾

우리는 이미 오랜 독재사회를 경험했고 그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당한 국가권력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발전과 민주적인 시민의 삶보다 권력의 쟁취와 안정에 우선성을 두는 일부 정치세력들은 그들이 휘두르는 부당한 공권력을 여전히 흡스의 정치철학을 통해 정당화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흡스의국가권력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서 흡스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는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의회과가 왕당과에 맞서 권력을 쟁취하고자 노력했던 혼란기를 경험했다. 그러한 사회적 혁명기에 일어났던 인민의 요구는 군주가 가진 권한을 주권자인 인민의 대표체로서 의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었다. 즉, 국가의 사법권은 물론 국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인민이 해야 한다 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당시 정치사상가인 파커는 "바로 인민이 권력의 원천이며, 따라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은 인민으로부터 나오는 것"¹¹⁾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군주와 관계없이 국가의 공공사안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¹²⁾ 왕권을 지키려는 왕당파와 인민주권을 주장하는 의회파의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그러나 권력을 놓고 벌어진 이러한 갈등은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즉, 인민주권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있었으나 의회라는 집단 역시 인민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집단 이상의 의미를 주지 못했던 것이

¹⁰⁾ 홉스에게 있어서 개인의 권리는 국가에 완전히 양도되는 것으로서 규정되지 않는다.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일부 양도하는 것은 자기보존과 평화의 추구라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국가는 그 성립의 토대가 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존중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만약 국가가 최초계약이 갖는 의미에 반하는 권력을 실행할 경우, 계약에 참여한 개인들은 더이상 그러한 형태의 계약아래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때, 홉스의 국가권력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철회될 수 있는 것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Roger King and Gavin Kendall, The State, Democracy and Globaliz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pp.86-87 참조.

¹¹⁾ 퀜틴 스키너, 조승래 역,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푸른역사, 2007, p.62 재인용.

¹²⁾ 위의 책, p.62 참조.

다.¹³⁾ 의회 역시 인민들 가운데 능력과 부를 지닌 계층의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갖는 권력도 부패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인민주권을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도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이러한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대의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를 인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 장'으로서 이해하기 보다는 직업 정치인들이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세속적인 '정치 판'으로서 민주주의를 회의하고 냉소한다. 적어도 국가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정의가 인민이라는 그 출발점을 중심으로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고 표현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시 홉스가 처해 있던 시대적 상황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그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14)

인민주권과 국가권력에 대한 해석과 정의에서 부딪힌 이러한 갈등과 한계는 흡스가 내린 국가의 개념에 의해 매우 선명하게 해결된다. 흡스는 국가를 인민들 개개인의 계약을 통해 성립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모든 개인이 자신이추구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갈등하고 경쟁하는 자연상태에서는 강제적인계약이나 상호간의 약속이 없다. 하지만 자기보존의 인간본성과 공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으로부터 계약을 통해 자신이 누리는 완전한 자유의 목록 중 일부를 제한하고 규정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이다.15)

자신의 목적과 이해관계에 몰두하여 투쟁이 불가피한 인간본성이 도대체 어떻게 계약이라는 단계로 개인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일까? 분명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의 의미를 투쟁상태가 아닌 평화의 상태에서 수용하는 인간은 투쟁을 바라는 인간보다 이성적인 인간이다.16) 홉스에게 있어 약한 인간본성은 바로 이

¹³⁾ 위의 책, pp.64-65 참조.

¹⁴⁾ 우리는 때때로 의회를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국가의 공공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국민의 대표체로서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국회 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파성에 치우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정권 재창출과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줄서기로 분주한 모습을 보 일 때, 의회는 부패하고 부당한 권력을 실행하는 대표집단 이상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것 이다.

¹⁵⁾ Janna Thompson, Justice and World Order, London: Routledge, 1992, p.129 참조.

¹⁶⁾ 이성적 판단이 상호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때, 그 이해관계에 놓인 개인들이 보다 더 큰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은 단적으로 '수인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를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 즉 죄수들에 의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파악되고(자연상태의 개인들에 의해 투쟁의 상태보다 평화의 상태가 그들의 삶에 있어 더 나온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동시에 그러한 선택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평화상태를 의욕하는 개인들이 함께 모여 투쟁상태를 끝내고자 하는 상호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적은 형량을 구형

성에 의해 극복된다. 이렇게 볼 때, 홉스의 계약론에는 '이성(reason)'이 상호간 의 계약을 맺기로 결정하는 개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전 제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그 이성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 이성의 성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성을 통한 인간본성의 극복과 그로 인한 상호간의 계약의 성립은 자연법을 통해 정당화 된다. 흡스에게 있어서 자연법은 여전히 추상적인 것이며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자연법이 신의법이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17) 그러나 자연법은 흡스에게 있어서 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성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와 토대가 된다.

흡스는 자연법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법이 바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신의 법이라고 주장한다. 흡스는 De Cive 에서 "정의는 평화로 가는 길로 불린다 … 정의와 평화는 서로 입을 맞춘다 … 평화를 추구하는 자에겐 신의 가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자녀들로 불려 질 것이기 때문이다 … 악을 외면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에 뒤따르라 … "18)는 성서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는 신이 부여한 이성을 지닌 인간이 신의 법인 자연법에 따라 반드시 끝내야 하는 '자연상태'이며, 그것은 서로 협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안정된 사회에서의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 이다). R. D. Luce and Howard Raiffa, *Games and Decision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57, pp.94-97 참조.

¹⁷⁾ 홉스는 De Cive (1642), Ch. IV에서 다음과 같이 자연법을 정의 한다. "도덕과 자연의법은 신의 법으로 불린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 옳다; 왜냐하면 '자연법' (the law of Nature)인 '이성'은 신이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부여한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 'living'의 원칙은 예수와 그의 예언자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만들어진 천국의 법률과 신의 권능으로부터 공표된 원칙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연법에 대한 이해를 성서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홉스가신의 법이 올바른 이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인용한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Psalm 3[.30-31]"정의로운 사람의 입은 지혜를 말해야 하고, 그 혀는 판단에대해 말하는 것이다: 신의 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Jerem. 31.33.: "나는 내 법을 그들 안에 둘 것이며, 또한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새길 것이다." Psal 19. 7.: "'주'(Lord)의 법은 영혼을 맑게 만들어 주며, ver. 8.: 주의 율법은 순수하고 우리의 시야를 밝혀준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이성의 기술이며 곧 자연법이라고 정의한다. Thomas Hobbes, DE CIVE English Version, ed. Howard Warrender,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83, pp.76-77.

¹⁸⁾ DE CIVE, 1983, Ch. IV, pp.77-78 참조.

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이 분명해 진다.19)

그런데 자연법에 따라 상호협력해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을 갖는다. 하지만 각 개인들이 서로를 강하게 신뢰하면서, 즉 상 대가 그 계약을 깨지 않고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계약을 충실 히 이행하고 지켜낼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바로 이런 의문이 지금까지 우리가 흡스에게 물어왔던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즉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이 행하기로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당사자들은 언제라도 그 계약을 어길 수 있다. 그것은 본래 추구하기로 했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계약을 불안정한 토대 위에 올려놓고 만다.

따라서 상호간의 체결된 계약은 어떤 외부적인 함에 의해 그 계약의 효력이 확정되고, 그에 대한 비협력과 위반에 있어 규제와 법적 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것이 바로 흡스가 자연상태로 부터 국가권력을 요청하는 정당화 과정의 핵심이다. 크리스면은 이것이 바로 흡소에게 있어서 시면사회의 출발점이며 시민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토대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가권력은 바로 퍼지배자가 되기로 결정한 개인의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로부터 요청되고 성립된 외부적 힘인 것이다. 30

이러한 홈스의 국가권력 해석은 우리에게 및 가지 핵심적인 명제들을 제시한다. 첫째, 개인은 자기보존과 공포를 회의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갖는다. 둘째, 그러한 경향은 이성의 범인 자연범에 의해 정당화 된다. 셋째, 광화를 위해 상호계약을 체결하고 신뢰를 마당으로 이행한다. 넷째, 계약의 효력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국가권력이라는 외적인 형을 요청하기로 합의한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개인의 이해관계를 군제하고 강제하는 국가권력의 합법성은 그 권력을 받아들어기로 결정하는 개인의 의지를 통해서만 정당화 된다는

¹⁹⁾ 홈스는 정화의 추구라는 자연법의 (본인적에 대해 연급하면서 통시에 순시대로 및 가지 자연법의 항목들을 제시한다. 그 중에 첫 번째의 두 번째로 제시하는 자연법의 항목은 정화추구를 위한 합력과 그 방법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 번째 자연법은 우리 모두가 모든 목적과 사물들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를 제지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게 될 때, 부행이 일어나면 정화가 위대롭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연법은 서로 합력하기로 약속한 대용에 대해 신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 나의 권리를 내 소스로 부정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 권리주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시합의 권리를 함해해서도 안 된다. 자제한 내용은 DE CIEE 1983. Ch. IV. pp.78~79 를 참조할 것.

²⁰⁾ John Christman,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London Routledge, 2002, p.33 養養,

것이다.

하지만 홉스의 국가권력의 정당화 방법론에 있어서 누군가는 그것이 폭력적인 권력의 실행을 정당화하는 난점을 지닌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홉스의 주권론이 근거하는 인간본성에 관한 가정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에게 무제한적인 권력을 허용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외적인 힘의 부재 상태인 자연상태보다 개인의 안전이 보장되고 야만적 상태가 통제되는 권력의 지배상태를 어쨌든 더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하게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²¹⁾

그러나 분명히 홈스는 외적인 힘으로서 국가권력이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홉스는 국가권력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미덕으로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그가 말하는 '안전(safety)'이라는 것이 단지 생명의 보존의 차원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여기에서 '안전'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계약에 동의하고 국가권력의 실행에 합의한 합리적 개인들이 가능한 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규정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는 국가는 자연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²²⁾

지금까지 우리는 홉스가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서 가정한 인간본성과 그 경향성 그리고 그런 여건이 요청하는 국가권력의 성립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권력의 합법성이 각 개인의 자발적 동의와 자율적 의지를 통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홉스의 관점으로부터 민주주의의적 통찰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어서 계약론의 관점에서 국가권력을 정의하려 했다는 유사성을 가지면

²¹⁾ Robert O Keohanne, "Hobbes's Dilemma and Institutional Change in World Politics: Sovereignty in Institutional Society" in Hans-Hennk Holm George Sorensen ed., Whose World Order? Boulder: Westview Press, 1995, p.168 常圣.

²²⁾ 홉스는 "국가는 단순히 개인의 생명보전이 아니라 행복의 차원에서 각 개인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인간의 조건이 허락 되는 한, 되도록 기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국가의 권력을 실행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좋은 것들과 행복의 추구를 위한 좋은 법률에 대해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자연법에 반하는 죄를 지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국가의 권력을 요청하고 실행하고자 했던 국민들의 신뢰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무력에 의해 통치권을 득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자신의 국민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또한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목적과 범위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국가권력의 한계와 그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DE CIVE, 1983, Ch. XII, IV, p.158.

서도 그 이론적 토대에서 홉스의 관점과 차이를 보이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살펴보자.

4. 국가이전의 사회 Ⅱ : 로크의 '자연상태'와 개인개념

로크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강조와 사회계약론을 다룬 저서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90)²³⁾은 흡스의 『리바이던』(Leviathan, 1651) 보다 거의 40년 뒤에 출판된 것이다. 로크 역시 흡스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내란 시기를 거쳤다. 보통 '자연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과 이해를 시도할 때 흡스와 로크를 비교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이론이 등장한 시기가 역사적으로 중첩되고 동시에 그들의 정치철학 내에서 사회계약론과 더불어 '자연상태'에 대한 개념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홉스와 로크에 있어 '자연상태'의 개념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일은 매우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계약의 여건으로서 자연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인식을 그들이 같이 한다고 할 때, 대조와 비교라는 작업은 다분히 형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홉스에게 자연상태는 자기보존을 위해 폭력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공포와 투쟁의 장이다. 반면에 로크에게 자연상태는 보다 선하고 이성적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홉스가 자연법을 통해 인간의 이성적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요청해낸 상태에서 로크는 그 이론적 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로크가 '자연상태' 개념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부분은 인간 의 본성에 대한 고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보다는 오히려 자연상태에 놓인 인간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는 존재인가에 대한 탐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때문에 로크가 자연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그의 이론체계 내에 설정하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을 뒷받침 하는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권리의 근거를 이해하고 나면 로크가 생각하는 국가권력의 한계와 개념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²³⁾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 P. Lasl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본고에서 로크의 『통치론』관 관련한 인용은 여기에 인용된 문헌을 사용한다. 그리고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인용할 때는 *Second Treatise* 로 표시하기로 한다.

로크의 『제2론』²⁴⁾ 은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그리고 목적에 관한 에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의 기원과 목적에 관한 로크의 견해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로크는 이 논문의 2장을 시작하면서 "정치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기원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고 말한다.²⁵⁾

로크는 자연상태를 흡스와는 다르게 접근한다. 즉, 악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의 투쟁의 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태이다.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강제나 억압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법에 따라 스스로를 규율해 나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차별과 복종 없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신의 법인 자연법에 의해 명백한 것이다.26)

로크 역시 흡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이성에 대한 믿음을 자연법에 근거하고 있다. 흡스에게 있어 자연상태의 개인들 역시 자연법에 근거하여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성을 갖는다. 그러나 자기보존과 공포의 회피라는 그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추구하는 계약을 맺는다는 사실로부터 규정되는 이성이 과연도덕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27) 그러나 로크의 경우 인간이성에 내재한 도덕성을 자연법에 근거해 보다 분명히 언급한다. 던 역시 "흡스의 문제는 윤리적 진공상태로부터 정치사회를 구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크는 전혀 그런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통치론』에서 그의 핵심적인 전제들이 명확하게 흡스가 가진 윤리적 진공상태의 부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라고 도덕성과 관련한 이론적 구성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²⁸⁾

로크는 완전한 자유상태가 방종의 상태가 아니며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연의 상태에는 자연상태를 지

²⁴⁾ 로크의 『통치론』은 다른 시기에 쓰여 진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보통 첫 번째 논문을 『제1론』 (The First Treatise of Government)으로, 두 번째 논문을 『제2론』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으로 부른다.

²⁵⁾ Second Treatise, para. 4, p.269.

Second Treatise, para. 4, 5, pp.269-270 참조.

²⁷⁾ 크리스먼과 그레이 역시 로크와 홉스의 이론이 갈라지는 중요한 지점을 자연법에 근거 한 이성의 개념이 도덕성을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서 찾는다. 자세한 내용은 John Christman,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pp.84-85 와 존 그레이, 손철성 역, 『자유주의』, pp.39-40 을 참조 할 것.

John Dunn, The Political Thought of John Lock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p.79.

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구속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연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연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신의 명령과도 같은 자연법을 능히 그 이성에 의해 발견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이러한 자연법은 인간은 누구나 독립적이고 평등하며 자유로운 존재 라는 사실을 각 개인에게 알려주며, 이것은 나에 대해 주권자인 나와 마찬가지 로 다른 사람 역시 동일한 주권자로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도덕률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을 위반한다면 그것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 행동 기준으로 규정해준 이성과 공통의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인류에게 위험한 존재가 된다. 로크는 '자연상태'에서도 자연법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매우 엄격한 기준과숙고에 따라 국가 속에서 행해지는 처벌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30)

그레이는 로크가 정의하는 자연상태에 대해 "로크는 홉스와는 달리 자연상태가 하나의 사회적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인간들은 대체적으로 평화적이고 선의를 가진 존재이며, 자연법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을 통해 각자의 행위를 조정한다"고 해석한다.31)

하지만 각자의 행위를 조정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자연상태라 하더라도, 그 안정성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 상호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을 스스로 조정해야 하는 불편함과 또한 자연법을 위반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문제들을 항상 안고 있다. 따라서 홉스의 '자연상태'만큼 큰 결점을 지닌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닌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로크는 자연상태가 갖는 이런 갈등과 충돌 그리고 사회적 조정의 문 제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공동의 정치적 권위를 요청하도록 만든다 고 생각했다. 이어서 사람들이 창출해내는 사회계약과 그로부터 이끌어 내는 국가의 역할과 권력의 개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²⁹⁾ Second Treatise, para. 6, pp.270-271 참조,

³⁰⁾ Second Treatise, para. 8-11, pp.272-274 참조.

존 그레이, 손철성 역, 『자유주의』, p.39 참조,

5.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로크의 계약이론

흡스와 마찬가지로 로크는 자연상태에 처한 개인들의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정치적 권위를 정당화한다. 로크에게 있어서 사회계약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우선 사람들이 그런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그들이 구성할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실제로 그 계약에서 이루어질 정부의 형태와 법의 내용에 관해 합의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계약은 성립되며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를 구성하게 된다.32) 로크에게 있어 정치사회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내는 데 개인의 동의는 핵심적인 것이며 그것은 로크의 전체이론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라고 평가된다.33)

그러나 이렇게 국가의 기원과 개인의 동의를 연결할 때 처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국가 성립 초기에 이루어진 각 개인들의 동의가 이 후 그의 후속 세대들의 동의까지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련된 것이다.

로크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동의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정부 아래에서 태어나게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지 속되고 있는 그들의 사회에 대한 동의는 매우 불분명한 것이 되거나 동의를 바 탕으로 성립된 사회계약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

동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로크에게 있어 반박 가능한 것이다. 우선 로크는 어떤 사회에 태어난 개인도 그 사회가 실행하는 권력에 복종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상태의 개인으로서 자연권을 가진 인간에 대한 권리를 일관되게 존중하는 것이다. 로크는 "사람은 어떠한 사회적 약속이라 할지라도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떤 계약으로서도 그의 자녀들이나 자손을 구속할 수 없다"34)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진정

³²⁾ 로크는 "이성은 우리 편에 놓여 있는 것인데, 역사의 많은 예들은 평화의 상태에서 시작된 이 세계의 정부가 그와 같은 기초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인민들의 동의에 의해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하면서 자연법의 이성을 지닌 인간이 함께 모여 계약을 실행하고 그 결과로 그들의 정부를 갖게 되는 것이 이 세계의 사실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Second Treatise, para. 104, p.336.

J. W. Gough, John Locke's Political Philosophy,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73, p.34 참조.

³⁴⁾ Second Treatise, para. 116, p.346.

한 자유를 갖는 존재가 되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자식의 자유도 침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가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이것은 그가 속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그런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국가는 그 자식에게 국가권력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지울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크의 견해에서 그의 동의개념에 불명료성과 불가능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한 사회의 후속세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속한 통치체의 국가권력에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로크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자신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권력도 그 개인을 복종시킬 수 없다."35)고 단언한다.

그러나 그레이는 이러한 로크의 동의개념이 그의 견해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갖는다고 비판한다. 만약 우리가 이런 동의개념에 기초해서 사회로부터주어지는 의무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면, 선행된 의무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주어질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구속력을 발휘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이것은 그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정당성과 합법적 권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자신이 태어난 정부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그 체제가 부여하는 의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확증하지는 못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로크가 주장하는 개인의 동의 개념이 보다 일관되게 정의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36) 하지만 개인의 동의가 사회계약의 성립과 정부의 수립에 있어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로크의 입장은 개인의 권리와 결정을 정치체제의 구성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위치에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크가 국가권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회계약에 참여했던 개인들은 자연법에 의해 규정된 자연권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 기초 가정은 계약 이후 정부가 성립된 뒤에도 가장 근본적인 토대로 자리한다. 즉 정치권력의 합법성은 자연권에 의해 확정된다.

따라서 권력의 실질적인 실행으로서 법은 그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

Second Treatise, para. 119, p.347.

³⁶⁾ John Christman,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p.45 참조,

는 안 된다. 로크에게 있어 법은 자연권을 지닌 이성적인 개인들이 진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것 외에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법이 없는 상황보다 법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법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는 "법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37)

그러나 로크는 그렇게 보호되고 확대되어야 할 자유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자유의 개념처럼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자유라는 것은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며, 각 개인이 복종해야 하는 법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명과 행위 그리고 재산을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 억압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처리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³⁸⁾

이렇게 볼 때, 로크는 처음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로 합의할 때 가졌던 목적을 법의 적용의 한계와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연상태의 사람들이 사회가 없었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고 법의 적용을 받기로 원한 까닭은 각 개인의 삶이나 처지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그 정치사회의 기원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권위와 권력의 합법성은 도출 될 수 없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정치권력은 법을 통해 집행되고 그 법은 입법이라는 과정을 통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입법과정은 정치권력을 규정하는 체계라고 봐야한다. 때문에 로크 역시 입법의 한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로크는 입법권에 대해 국가의 최고 권력임을 선언한다. (39) 그것은 자연법 아래에 놓인 것이며 적어도 그 기본 목적이 공공의 복지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입법권은 신성한 것이며, 어떤 권력의 형태를 지닌 것도 입법부의 의해서 숭인되지 않는 한 법률로서의 효력도 구속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는 "어느 누구도 각 개인의 동의와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부여된 권위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사회에 대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수 없다." (40)고 주장한다.(41)

Second Treatise, para. 57, p.306.

³⁸⁾ 위의 책, 같은 곳.

³⁹⁾ Second Treatise, para. 135, p.357 참조.

Second Treatise, para. 134, p.355.

⁴¹⁾ 로크는 입법권에 관한 권력이 어떤 형태의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만약 정치사회전

그러므로 로크에게 있어 정치적 권력과 전제적 권력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기술될 수 있는 것이다. 로크에 따르면 정치적 권력은 그 권력이 사회의 사람들의 복지와 재산의 보호를 위해 마땅히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자연권을지난 개인으로부터 계약을 통해 국가에 위임된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이며 자의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분명히 의견의 일치와 개인 상호간의 승낙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당화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에 전제적 권력은 한 인간이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며 생명은 물론 재산과 자유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절대적이며 자의적인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계약이라는 개념 또한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제적 권력은 자연상태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권력이다.42)

이렇게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설명한 로크는 그 계약의 본질을 보다 타당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정치체제의 해체에 관한 내용까지도 언급한다. 그는 정치적 권력을 제대로 사회에 구현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회의 성원들은 그 정치체제를 부정할 수 있으며 의무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크에 따르면, 정부의 해체는 외부의 침략에 의해 해체되는 경우와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부패하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국민들에게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로크는 바로 후자에 있어서 강조점을 둔다.(43) 그리고 "만약 국민의 동의와 임명이라는 절차 없이 국민들 중의 한 사람이나 특정집단이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정당한 권한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국민이 복종할 의무가 없다"(44)고 말한다. 이런 경우 국민은 스스로그 복종상태를 부정하고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고 새로운 입법부를 수립하기위해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크의 국가권력 개념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권을 가지며 자연법에 의해 그 권리가 규정되는 개인의 자발적 동의와 계약으로부터 정당화 된다. 그리고 이 러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실행되는 권력은 국민에 의해 인정될 필요가 없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홉스와 유사한 사회계약론을 그 이론적 논중의 주요체 계로 삼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국가성립 이전에 보다 충실하게 지지해

체를 지배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어떤 권력자가 그들이 법률을 부과하려는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발생하는 권위에 의거하지 않고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전제(專制)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개인의 동의는 로크의 정치철학에서 가장 명확하게 제시되는 근본전제이다. 자세한 내용은 Second Treatise, Ch. 11 을 참조할 것.

⁴²⁾ Second Treatise, para. 171-172, pp.381-383 참조.

⁴³⁾ Second Treatise, para. 211-213, pp.406-408 참조.

⁴⁴⁾ Second Treatise, para. 212, p.408.

내고 국가권력의 정당화에 핵심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현대 민주 주의의 실천적 이상과 정당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정치철학 적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흡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적 토대를 중심으로 개인과 국가권력의 정당성 개념을 살펴보았다. 개인의 권리를 인식하면서 민주적인 정치체제 구섯 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표출되었던 사회적 혼란기는 당시의 사람들을 국가권 력과 개인의 정치적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이끌었음 것이다. 오늘날 우리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의 형식주의에서 비롯되는 정치권력의 부패와 남용을 끊임없이 마주치고 있으며 고민한다. 로크가 정치권력에 대한 부정과 불복종의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정치권력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계층과 집단의 이익논리로 작용할 위험이 다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흡스가 개인의 이익과 자기보존이라는 이성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단순히 평화의 추구라는 명제의 테두리로 제하하 이유 또한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이들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계약론적 관점은 우리가 진정한 정치공동체와 시민적 삶을 고민한다고 할 때,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원자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라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권력 앞에서. 자칫 억압되고 강제당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그 기원의 핵심에 위치 시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정치철학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힘으로 독재에 대항하며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주는 정치적 의미와 시민적 삶의 관계를 역사적 체험을 통해 생생히 기억하며 그 의미 또한 가치 있게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성취되는 정치적 영역이 자본주의와 자유경쟁시장이라는 경제적 영역에 압도되어 어렵게 성취한 민주화의 역사적 의미가 퇴색하는 현상을 겪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시민들이 개인적인 행복과 성공에 몰두하여 모두와 경쟁하는 동안 민주주의는 그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성숙한 민주주의의 부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권력을 '가진 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도록 추동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깊은 의미를 시민의 민

주적 권리로부터 파악하고자 하는 정치적 역량을 박탈한다. 그리고 인간적 선과 복수성이 만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정치를 한 순간에 사법적 절차에 따른 숭인과 실행이라는 협소한 맥락으로 축소시킨다.

정리해고 노동자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존권을 주장하다가 국가로 부터 처벌을 받는 사례를 보면, 우리는 국가의 권력의 본질에 대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국가권력의 실행이 법적 질서를 일관되게 확립하고 사회의 안정과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기본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국가권력을 정당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시민들이 갖는 삶의 이해와 공유된 가치로부터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단순히 사법적 해석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대의민주제를 통해 국가에 부여하는 권위라는 것도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완전한 요소로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적어도 진정한 정당성은 시민들의 행복과 공유된 가치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형식적 정당성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통해 성취된다고 볼 수 있다.

흡스와 로크가 사회계약론을 통해 구체제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해방시키고 그 가치를 견고히 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정치적 사태 안에서 억압되는 인간적 가치들을 발견하고, 진정한 시민적 권리의 성취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가권력은 시민사회를 축소시키고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밀어내는 사법적 권력으로서가 아닌, 시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공공의 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환, 「흡스의 힘의 정치철학: 폭력과 통제」, 『동서철학연구』 제29호, 한국동서 철 학회, 2003.
- 숀 세이어즈, 김요한역, 『숀세이어즈의 플라톤 「국가」해설」, 서광사, 2008.
- 존 그레이, 손철성 역, 『자유주의』, 도서출판 이후, 2007.
- 퀜틴 스키너, 조승래 역,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푸른역사, 2007.
- Christman, John,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London: Routledge, 2002.
- Dunn John, The Political Thought of John Lock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 Gough, J. W., John Locke's Political Philosophy,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73.
- Hobbes, Thomas, Leviathan, ed. Michael Oakeshott, Oxford: Basil Blackwell, 1946.
- Hobbes, Thomas, DE CIVE: English Version, ed. Howard Warrender,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83.
- Keohanne, Robert O, "Hobbes's Dilemma and Institutional Change in World Politics: Sovereignty in Institutional Society" in ed. Hans-Henrik Holm and Georg Sorensen, Whose World Order?, Boulder: Westview Press, 1995.
- King, Roger and Kendall, Gavin, The State, Democracy and Globaliz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 P. Lasl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Luce, R. D. and Raiffa, Howard, Games and Decision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57.
- Macpherson, C. B.,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Hobbes to Lock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 Strauss, Leo, The Political Philosophy of Hobbes, Chicago: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1952.
- Thompson, Janna, Justice and World Inquiry, London: Routledge, 1992.

[Abstract]

State Power in the Tradition of Social Contract Theory

Lee, Chung-Ha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roblem of the legitimacy of state power has become more and more central political issue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because the rel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state is tend to be in a certain tension, there is some limitation of individual life from state power. Of course, this political power is defined by constitutional law which is based on citizens' rights and happiness. However, it is easy to meet unfair political situation that state power violates individual rights. If the state power is just for a certain classes and politicians, it would make serious social conflict and fragmentation.

Today, we can't make sure that we are not in this kind of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Perhaps, we might be situated in democratic political system which does not respect individual rights more fairly. Many are suspicious about the way which state power is carried by the politic and the law.

In this paper, I will look at the tradition of social contract theories of Hobbes and Locke. Then, we will examine the conception of the legitimacy of state power in the contractual tradition. Hobbes want to show how cooperative civil society can develop and exist amongst human beings in 'the state of nature' His political theory has been valued as a typical political theory which made the foundation of modern democracy because he think that individual rights is most important and crucial factor that state power should consider for its exercise. Similarly, Locke also insists that it is impossible for government to give a certain political duty to the citizens without their consent. For Locke, political power should be a certain power for public good and promotion of citizens' life.

I argue that we will be able to reflect and consider about our political situation with the legitimacy of state power throughout their contractarian view. So I am trying to deliberate about the genuine political power in our political society with this work.

Keywords: State Power, State of Nature, The Law of Nature, Social Contract

□ 이 논문은 2012년 02월 12일 접수되고 2012년 03월 15일 심사 완료되어 2012년 03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